##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98호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20조의2(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(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)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신고 수리 자동화를 위한 세부 운영 규정인「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 동화 운영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.

> 2023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20조의2(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(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)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(이하 "통합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"이란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39조의2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.
- 2. "전자심사"란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.

- 3. "전자심사 기준정보(이하 "기준정보" 라 한다.)"란 「식품위생법」제7 조제1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,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별표 9에서 정하는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관한정보 등 전자심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정보로서 수입신고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이 되는 정보를 말한다.
- 4. "운영부서"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·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 로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을 말한다.
- 5. "담당부서"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접수부터 수입신고확인증 발급까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지방청 수입관리과(또는 식품안전관리과) 및 수입식품검사소를 말한다.
- 6. "지원부서"란 자동 수입신고 수리에 필요한 기준정보를 새로이 만들거나 개정하는 부서로서 현지실사과, 수입검사관리과, 식품기준과, 유해물질기준과, 첨가물기준과 등을 말한다.
- 제3조(전자심사 구축·운영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에 전자심사 기능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심사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.

- 1. 용도별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
- 2. 수입허용 여부,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4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 여부,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9 제3호다목7)에 해당하는지 여부, 한글표시 기재 내용의 적합 여부 등 적법성 확인
- 3.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 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등이 검사 후 신고 수리한 수입식품등과 비 교하여 제품상태 등 일치 여부 확인
- 4. 검사장소 반입 여부 및 선명, 선적항, 반입장소 등 수입신고 입력정보 오류 여부 확인
- 5.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별표 9 제2호에 따른 검사종류 분류
- 6. 기타 구비서류 제출 대상 여부 등 수입신고 수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
- ③ 제2항에 따른 전자심사 검토항목별 검토결과가 제2항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하고는 부적합이거나 적·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관계 공무원등의 직접 검토가 필요한 경우 '검토필요'로, 적합한 경우 '특이사항 없음'으로, 해당 항목의 검토 대상이 아닌 경우 '대상 아님'으로 각각 분류한다.
- ④ 전자심사의 모든 검토항목에서 '검토필요'로 분류된 항목이 없는 경우 전자심사 결과를 '적합'으로 판정한다.

제4조(수입신고 입력정보 관리) 담당부서의 장은 정확한 전자심사를 위하

여 수입신고서의 입력정보에 오타·오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완료 전에 해당 오류를 정정 조치하여야 한다.

- 제5조(기준정보 관리) ① 지원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기준정보의 등록, 변경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기준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. ② 우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기준정보를 데이터베
  -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기준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, 변경 또는 삭제 처리하고, 지원부서의 확인을 받아 그 이력을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③ 지원부서의 장은 기준정보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등록, 변경 또는 삭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운영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  - ④ 운영부서의 장은 기준정보의 현행화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⑤ 담당부서의 장은 현행화 되지 않은 기준정보 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운영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제6조(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적정성 확인) ① 운영부서의 장은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검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계획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제7조(전자심사 운영 중단) ① 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심사가 중단없이 운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.
  - 1. 장애 복구 및 점검을 위하여 중단이 필요한 경우
  - 2. 기능 개선을 위하여 중단이 필요한 경우
  - 3.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중단이 필요한 경우
  - 4. 기타 운영부서의 장이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
  -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 사전에 중단 시기와 중단 사유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화재 등 불 가항력의 사유로 전자심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.
  - ③ 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심사에 장애가 발생하여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운영이 재개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, 장애 발생 원인, 조치내용·결과,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 처리결과를 기록 및 보관·관리 하여야 한다.
- 제8조(정보 보호 관리 등) ① 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심사 관련 정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호·유지하기 위하여 「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」,「개인 정보 보호법」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하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외부로부터의 해킹 등 침입 시도에 대한 보안대책

- 2. 정보 부정 유출 방지대책
- 3. 사용자 접근권한 및 사용 기록 관리
- 4. 개인정보보호 관리
- 제9조(재검토 기한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